

(문) 화재예방의 기술 지도 및 계통에 盡力하시는 貴協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高層建物을 管理하는 管理擔當者입니다 本人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설치하고 있는 消人器는 주로 포말 소화기입니다 포말 소화기의 소화약제에 대한 법적 有効期間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謂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점주야 노력하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포말 소화기 뿐만 아니라 각종 소화기의 약제에 대한 유효기간이 國內法規에는 規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소화기구에 대한 설치 및 유지의 기준)에 소화 약제는 凍結變質 또는 噴出할 難度가 적은 곳에 설치 토록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國內法上에는 동결 번질이 되지 않고 분출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면 소화 약제의 유효기간은 아무리 걸어도 무방하다는 逆說도 成立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는 그 설치 목적 이 초기의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항상 그 소화 약제가 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말 소화기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통과 외통으로 되어 있고 내통에는 광산알루미늄이 용해되어 있고 외통에는 중탄산나트륨이 용해되어 있어 사용시 이 두 용액을 혼합시켜 끓으로써 탄산가스가 발생 불을 끌 수 있는 거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말 약제는 두 약제를 혼합하여 포말이 발생된다면 약제를 중약한 난짜의 경과 기간은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탄산나트륨은 물에 잘 용해하지 않으므로 중약한 날짜가 오래되거나 겨울의 영하의 날씨에 열기 되면 녹아 있던 약제가 다시 점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시 소화할 수 있는 거품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포말 약제는 수시(3~6개월 정도)로 점검은 하고 겨울과 외통과 내통의 약제를 반응시켜 포

제37조의 기준 이상이라면 포말 약제의 유효 여부는 중약한 기간과는 無關합니다

미국의 National Fire code 中 Recommended Good Practice for the Maintenance and use of Portable Fire Extinguishers (NFPA Vol 8 No 10A-1973에 수록)에도 소화기 약제의 유효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시점사를 하여 약제가 불량할 경우 재충약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 등에서와 같이 포말 약제의 발포 시험을 할수 있는 기구들은 구비하기가 곤란한 곳에서는 대체로 1년에 한 번 정도교체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미국의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Fire Protection Hand Book"(제18판) Section 18 Chapter V 및 Factory Mutual System의 "Hand Book of Industrial Loss Prevention" Chapter 25 (Portable Fire Extinguisher) '도 역시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포말 소화기의 소화약제 유효 기간은 法上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점사를 하여 异常이 있으면 1년이 끝되어도 즉시 소화약제를 교체하고 겨우 기구를 갖추지 못할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약제를 재충약 하도록 당협회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技術研究部>

차장 이승위

相談코너

安全點檢

말이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점정 규칙 제 37조 "포말 소화 약제의 성분 및 성질"에 포말 소화 약제는 섭씨 20도의 온도에서 반응시켰을 때 생기는 거품의 용량이 소화 약제의 7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응 후 15분이 경과한 후 그 거품의 용량이 25퍼센트 이하로 감소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점검시 외통과 내통의 약제를 반응시켜 포말의 생성 능력이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점정규칙

(問) 法律 2482號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特殊建物은 “特約付人災保險” 加入을 原則으로 하되 時價決定基準標에 의해 保險金額은 所有者가 定하고 加入시키면 모든 節次가 끝나는데도 本入의 意思와는 다르게 保險會社側決定價額으로 加入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한 消滅式 또는 質蓄性의 加入方法을 두어 加入者가 兩者擇一하도록 하는 方法은 없는지요?

〔答〕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立法취지로 보아 保險金額을 保險加入者가 決定할 경우

첫째로 特殊建物 所有主는 保險料負擔을 고려 特殊建物의 價額을 낮게 策定 罷災時 一部保險에 依한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补償은 커녕 實際損害額을 补償받을 수 없을 경우 損害復舊에 기할 수 없으며 保險契約者 및 第3者에 對한相當한 金額의 补償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社會的 문제가 發生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大型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에 建物所有主가 다행이 財產이 있을 경우에는 그 补償이 可能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義捐金이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补助에 의하여 약간의 补償을 할 수 밖에 없는 實情 등을 고려 災害復舊費 또는 人命被害補償을 制度의 責任지는 保險制度를 同法律의趣旨에서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實例로 同保險의 社會保障의 性格을 감안하여 身體損害賠償特約

付保險金은 이를 押留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保險金의 請永도 保險契約者가 아닌 被害者가 直接 保險會社에 請永할 수 있도록 하여 被害者の 早速な 安定을 阻止코자 한것 等을 들수가 있다

時價決定方法과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同保險이 任意保險이 아닌 社會保障的性格을 고려할 때 保險金額을 合理的으로決定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므로 保險金額決定方法의 關係法條文과 關連하여 그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에 의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萬一 保險契約當事者間에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特殊建物을 기준으로 하여 決物時價調查會에 裁判의 意見을 들어 同加額을 建物主에게 제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도록 하고 있다

同保險은 義務保險이면서도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시가 결정에 异議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异議제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貯蓄性保險加入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加入者的 購買에 따라 장기 저축성보험加入을 할 수 있으며 특약부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風災 水災 또는 倒壊등으로 인한 손해를擔保하는 保險에加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本契約은 同法律 第5條 第5 항에서 규정한 [특수건물] 소유자는 제1항의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을 매년 更新하도록 한 것을 들어 마지 一年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동항은 1회만을 가입한 후 미개신계약의 상태, 즉 무보험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반드시 1년마다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相談코너

特殊保險

따라서 特殊建物의 時價는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한 金額定하도록 하고, 該建物의 건축설계 요령 건축자재의 우열 施工方法의 差等 地域差 用度 使用期間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同基準額의 100分의 10을 조과하지 않는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위를 조과하여 建物時價를 加減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契約當事者間의 合議

<特殊保險 1部>
차장 조정수